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지식경제부
	배포 일시	2011. 2. 21(월)	
작성 부서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	정현출 과장 / 이동흥 사무관(500-1802)	
	지식경제부 지역특화팀	송현민 팀장/ 김진구 사무관(2110-4748)	
보 도 일 시	2011년 2월 22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지역 산업화를 위해 농식품부·지경부가 손잡는다!

- 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 MOU 체결 -

재정지원사업, 농공단지, 지역특구 운영 등 연계·협력 시스템 구축

□ 농어촌 정책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유정복)와 산업정책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장관 : 최중경)가 낙후된 농어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양 부처의 역량을 한데 모아 농어촌 지역 산업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 이와 관련해 농림수산식품부와 지식경제부 양부처 장관은 효율적인 농어촌 산업정책 추진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서에 서명하고 '11. 2. 21(월) 이를 서로 교환하였다.

□ 이번 협약은 농어촌 지역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이 양 부처에서 별도의 체계에 따라 독립적으로 실시됨으로써 정책 추진 역량이 분산되고 있다는 반성을 바탕으로,

○ 그 동안 기능별·단위사업별로 개별 추진하던 지원정책을 기능간·사업간 연계·협력이 가능하도록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양 부처의 공통된 인식에서 추진되었다.

참고 양 부처의 농어촌 지역 산업정책 추진 현황

- 예산지원사업(농식품부 : 향토산업육성,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지경부 : 지역연고산업육성, 지자체연구소육성) : 양부처의 정책간 지역적 오버랩 존재
- 농공단지 : 농식품부, 지경부 등이 역할을 분담하여 공동 운영 → 영세성, 특성화 미흡, 노후화 등으로 성장이 정체
- 지역특구제도 : 지경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143개 특구)하나, 규제완화 이외에 별도의 직접적인 정부예산 지원 부족으로 활성화 미흡

□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양 부처는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① 동일한 농어촌 지역에서 시행되는 재정지원사업 추진시 양 부처의 기능과 역할을 연계·협력하여 사업 효과를 제고하기로 하였다.

② 지역특구와 관련된 재정사업의 우대조치 등 예산지원 사업의 효율성과 특구 경제의 활력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③ 농공단지의 경우 지역특성을 살리는 특성화 단지 개발로 유도하기 위해 조성비 지원 확대와 투자촉진보조금의 우선 지원 등 정책수단을 강구하기로 했다.

- 또한, 농공단지가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의 메카로 기능하도록 정책공조 체제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④ IT 기반의 농어업 서비스 기업 창업 등을 통해 농어업 경영 선진화도 도모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양부처는 우선 중앙정부 차원의 「농어촌산업정책 추진지원단」을 구성하고, 각 지역 차원에서는 「농어촌자원 산업화 TF」를 구성, 운영하기로 하였다.

○ 이를 통해 지역산업 정책의 수립단계에서부터 시행, 평가, 환류 등 전 과정에 걸쳐 상호협력, 정보교류, 중복투자 예방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 양 부처는 우선, 지역차원에서 협약내용이 구체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세부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 재정지원사업의 경우, 지역단위 「농어촌자원 산업화 TF」에서 지역별 중첩사업에 대한 세부협력계획을 수립하고,

○ 금년 2~4월중 중앙단위 「농어촌 산업정책 추진지원단」에서 지역별 세부협력계획에 대한 검토를 거쳐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붙임 1. 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 업무협력 협약서
2. 농식품부·지경부 농어촌지역 산업정책 연계·협력 계획
3. 참고자료(지역단위 부처별 지원사업 현황,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현황, 농공단지 부처별 지원 현황)

붙임 1 농식품부-지경부 업무협력 협약서

농림수산식품부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mKE 지식경제부

효율적인 농어촌 산업정책 추진을 위한 농림수산식품부와 지식경제부간 양해각서

제1조(목적) 본 양해각서는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가 농어촌 산업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 추진 효과를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협력 분야) 농식품부와 지경부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호 협력한다.

1. 동일 지역내 예산지원사업 연계·조정 및 선정 협의
2.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 효율화를 위한 예산사업의 연계 추진
3. 농공단지 개발·운영 업무의 공조체계 강화
4. IT기반 서비스기업 창업을 통한 농어업 선진화 지원
5. 기타 농어촌 지역 산업정책 추진과제 정보공유 및 연계협력 추진

제3조(농어촌 지역산업정책 추진 지원단) ①농식품부와 지경부는 제2조에 규정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산업정책 추진 지원단」(이하 '지원단')을 구성·운영한다.

②지원단장은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과 지경부 지역경제정책관으로 하고, 지원단원은 농식품부 지역개발과장, 지경부 지역특화팀장과 유관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 10인내외로 구성한다.

③지원단은 분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수시회의를 개최한다.

④농식품부와 지경부는 지원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신의성실의 원칙) 양 부처는 본 협약서에 합의된 내용에 따라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긴밀히 협조한다.

제5조(효력) 본 양해각서는 농식품부와 지경부 두 기관이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협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농식품부와 지경부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1년 2월 21일

농림수산식품부를 대표하여	지식경제부를 대표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지식경제부 장관
유 정 복	최 중 경

붙임 2 농식품부-지경부 농어촌지역 산업정책 연계협력 추진계획

Ⅰ. 추진 배경 및 여건

❑ 농어촌 지역 산업정책은 농식품부, 지경부 등이 **별도의 지원체계**에 따라 **독립적**으로 실시 중

○ 농어촌 지역 시행사업의 경우, 양부처의 정책간 **지역적 오버랩**이 존재 ⇒ 지원 분야 및 시행주체가 달라 중복지원 문제는 없으나, **시너지 창출을 위한 相補(상보)적 연계** 가능

* **농식품부** : 주로 1차산업의 2·3차산업 연계를 위한 인프라 구축, 상품개발 등에 중점을 두어 **시·군·구가 시행 주체**

* **지경부** : 제조업, R&D에 중점을 두어 **출연기관, 대학, 연구소 등이 주된 시행주체**

○ **농공단지**는 농식품부, 지경부 등이 역할을 분담하여 공동 운영 ⇒ 영세성, 특성화 미흡, 노후화 등으로 **성장이 정체**

○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구** 제도 운영(143개 특구) ⇒ 규제완화 이외에 별도의 **정부예산 지원 부재**로 **활성화 미흡**

❑ 농어촌 지역의 경제활성화라는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양 부처 사업간 연계·협력 추진**이 필요

○ 부처간 개별 기능의 연계 및 중첩되는 기능의 조정을 통해 **정책추진 역량을 집중**

※ 기능별·단위사업별 개별 접근 → **지역중심으로 기능간·사업간 연계 접근**

Ⅱ. 추진 계획

1. 기본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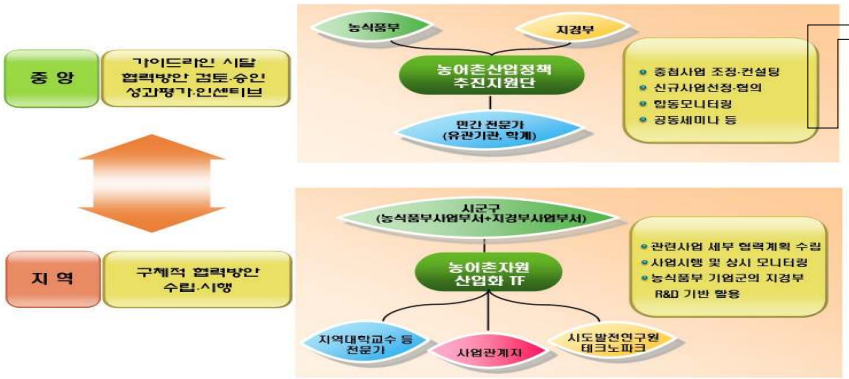
❑ **동일 지역, 동일 연고자원을 대상으로 한 양 부처 사업간 협력체계를 우선 마련**하여 사업간 시너지효과 제고 도모

○ 지역특구, 농공단지 등 **농어촌지역내 산업 인프라 활성화**를 위한 **양 부처 재정사업 지원 등 공조체계 구축**

❑ 이를 위해 **중앙 정부 차원의 「농어촌산업정책 추진지원단」**과, **지역 차원의 「농어촌자원 산업화 TF」** 구성·운영

* 부처간 협력과제에 대한 MOU 체결 및 지역별 협력체계 구축 가이드라인 제시 예정

< 양 부처 업무협력 추진체계도 >



< 중점 추진 과제 >

◇ **공간적 중첩** 사업의 **연계·협력** 추진

◇ **지역특구**와 **예산사업 연계**를 통한 특구운영 활성화

◇ **농공단지** 육성업무 **공조체계** 강화

◇ **IT기반 농어업 경영 서비스 지원 확대**

2. 공간적 중첩사업 연계·협력

◈ **농어촌 지역에서 시행되는 양 부처의 사업 추진시 부처별 기능·역할 재정립으로 사업추진의 체계화·효율화 도모**

❑ (**기능 재정립**) 각 부처가 갖고 있는 **강점을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부처간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

○ **농식품부** : 농수산물 **생산·유통·가공** 및 **체험·관광** 등 농어촌 지역의 **종합적인 개발·발전** 분야 지원에 집중

○ **지경부** : **제조업** 등 2·3차산업 및 **R&D 분야** 지원에 집중

❑ (**대상 사업**) **동일 기초단위 지자체 또는 연접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

○ **농식품부**의 향토산업육성사업,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과 **지경부**의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지자체연구소육성사업

* 예시 : 원주 한지, 보은 대추, 금산 인삼, 서천 모시, 진안 홍삼, 완도 전복, 나주 염색, 의성 마늘, 산청 한방, 거창 화강석 등

❑ (**시행 방안**) 양부처 공동(추진지원단)으로 기 시행사업의 내용 조정 및 시행예정사업의 사전 조정 등 중앙 및 지역단위의 **연계협력 시스템** 구축·운영

○ **시행중 사업** :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농어촌자원 산업화 TF」를 통하여 동일 지역내 양 부처 시행 사업의 연계·협력방안 마련 시행

* 협력방안에 대해서는 양부처에서 「농어촌 산업정책 추진지원단」을 통하여 검토·승인(협약변경 등)하는 등 코디네이터 역할 수행

○ **예정 사업** : 양 부처 공동으로 기획단계에서 자체 조정, 선정단계에서 사업내용 등 정보공유, 시행단계에서 내용 조정 등 시행

※ 양 부처 사업의 연계협력 방안을 구체화한 **연계협력 시행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여 각 사업 시행기관 등에 시달(2~3월)

3. 지역특구 제도와 예산사업 추진 연계

◈ **지역특구 운영과 예산사업 지원 연계로 예산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특구 활성화 동시 추구 → 연계시 인센티브 지원**

❑ **(특구운영 현황)** 지역특구 관련 규제 특례법에 따라 **143개 특구**를 지정, 126개 규제의 완화·권한 이양을 통해 지역특화 발전을 제도적으로 지원

○ 지정분야는 농수산 특산물 등 **1차산업과 교육·관광·레포츠 중심**으로서 **농식품 관련 향토자원 특구가 41%**(59/143) 수준

계	향토자원	관광레포츠	교육	산업연구	물류유통	의료복지
143	59	36	20	15	9	4

○ 특구지정이 규제완화 등을 통한 특화사업 추진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정부의 직접적인 **예산지원 부재로 활성화는 미흡**

❑ **(시행 방안)** 특구 관련 재정사업 확대를 위해 **신규사업** 선정·기획시 **인센티브** 부여 및 **기존사업**에 특구 **활성화 방안** 포함

○ 중앙정부 직접 선정이 가능한 사업은 가점부여 등을 통해 우선 선정하고, 특구내 예산지원 활성화를 위한 추가특례 발굴·적용

○ 지역단위에서 기획·선정하는 경우에는 우선 선정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시달하고, 추가예산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 특구 관련 재정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해당 지역 재정사업의 특구 활성화 도모 계획안을 추가 마련

※ **지원대상 예산사업 :** 농식품부의 향토산업육성사업,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및 지경부의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 예시 : 양평 친환경, 원주 한지, 영동 포도, 충주 사과, 양촌 감, 서산 바이오웰빙, 순창 장류, 고창 복분자, 영양 고추, 산청 한방 등

4. 농공단지 육성 업무 공조체계 강화

◈ **농공단지를 특성화하고 단지 가치를 제고하여 지역산업메카 기능 수행이 가능하도록 양부처 정책 공조**

❑ **(특성화)** 농공단지 운영과 지역산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연고산업 기반의 특화산업단지와 전략산업 연계 전문산업단지로 집중 육성**

○ 특성화된 농공단지는 **조성비 지원*, 면적제한 완화**(연접지 단계별 개발 등)를 통해 **규모화·집적화 촉진**(농식품부)

* **특성화 단지 확장시** 조성비 지원 및 면적을 현재(일반농어촌 3만원/3.3㎡, 추가 우선지원 농어촌 7만원/3.3㎡, 면적은 단지별 3만~33만㎡)의 **2배까지 확대**

○ 특성화된 농공단지에 **기업주치의*, 지역투자촉진보조금 등을 우선 지원**(지경부)

* 대기업 퇴직인력 등을 단지별 기업주치의로 위촉하여 기술자문 지원

- 또한, 농공단지 클러스터 사업은 지역의 선도·전략산업과 연결되어 있는 **전문단지 입주업체 중심으로 지원**

❑ **(단지가치 제고)** '80~'90년대 조성된 노후화된 단지의 **생산기반을 정비**하고 **명칭 변경**으로 이미지 개선

○ 공업용수·진입도로 등 **노후단지 기반시설의 개보수 우선 지원***(농식품부)

* 신규단지 대비 노후단지 지원비율 목표 : ('10) 100 : 0 → ('13) 50 : 50

○ 농공단지 명칭에 수반되는 낙후·영세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입주기업의 대외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법적 명칭 변경** 추진(지경부)

5. IT기반 농어업 경영 서비스 지원 확대

◈ 농어업 종사자에 대한 경영정보 컨설팅을 맞춤식으로 수행하는 IT기반 전문 서비스기업 창업 시범 지원

❑ **(추진 전략)** 수혜 농어민의 **지속적인 컨설팅이 가능한 IT 기반 서비스업의 창업**을 유도 후 **시장주도 기업으로 전환 추진**

○ **(지경부)** 금년도 Biz Plan & design 중심의 소규모 지원후, 차년도 평가를 통해 선별 확대 지원하여 **IT기반 서비스업 창업***

* '11년부터 지역 대학(원)생 대상 창업지원(최대 3년) 사업 추진

○ **(농식품부) 창업기업의 농어업경영컨설팅사업 참여**(컨설팅 인증업체 POOL에 포함) 및 U-Farm 선도모델 개발확대로 IT기반 농어업경영 저변 확대

*** 농식품부 U-Farm 선도모델 개발사업**
- 농어업 생산·경영·유통 분야에 선진 정보기술을 적용함으로써 농어업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영농과정의 데이터 축적→재배기술력 향상 및 경영성과 분석)

6. 향후 계획

❑ 「농어촌 산업정책 추진 지원단」(중앙) 및 「농어촌자원 산업화 TF」(지역) 구성 및 협력업무 세부시행 지침 마련 : '11. 2~3월

❑ 지역별 세부협력계획 수립 및 검토·승인(양부처 공동) : '11. 3~4월

〈참고자료〉

1. 지역단위 부처별 지원사업 현황

☐ 향토산업육성사업(농식품부)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목적	○ 농어촌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향토자원을 발굴하여 다양한 1,2,3차 산업이 연계된 복합산업으로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지원계획 (예산)	○ 사업규모 : '13년까지 200개 향토자원 산업화(매년 30개 사업) ○ 지원조건 : 3년간 총사업비 30억원(국고 50%, 지방비·자부담 50%) ※ '11년 예산(국고) : 406억원 * 회계명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광역발전계정)
지원대상	○ 사업시행주체 : 시·도지사, 시장·군수 ○ 지원대상 : 농어업인조직, 향토기업, 생산자단체, 연구단체 등
선정절차	○ 사업계획공모(전전년도)→ 대상자원 선정(농식품부) → 사업계획컨설팅→ 지원대상 최종확정(전년말) → 사업추진(3년간)
지원내용	○ 산업화 및 마케팅 등 S/W분야 - 홍보·마케팅, 디자인·브랜드 개발, 제품기술 개발 연구, 향토자원 권리화, 사업추진단 운영, 전담인력 비용, 전문교육프로그램, 네트워크 구축 운영비용 등 ○ 생산기반 조성 등 H/W분야 - 제품개발·생산시설, 판매시설, 체험시설 등 * 지원제외 : 토지·건물의 매입 또는 임차비용 등
사업특징	○ 산·학·연·관 등 다양한 사업주체가 참여하는 사업추진단 구성 의무화

□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농식품부)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목적	○ 농어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차-2차-3차 복합산업화를 촉진하고, 창업 및 기업유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의 경제활동 다각화와 소득·고용기회 증대 도모
지원계획	○ '11년 예산(국고) : 2,435억원 ○ 사업규모 :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등 21개 사업 (신규7, 기존 14)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자부담 포함) *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정액지원
지원대상	○ 사업시행주체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농공단지 조성 : 특별·광역시, 수도권지역 시·군·구 제외 ○ 지원대상 :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농수산물가공업체, 체험·휴양마을사업자, 연구단체 등
선정절차	○ 시·도자율편성사업 - 사업신청(사업자) → 선정 및 예산신청(지자체) * 시설·토목사업이 포함된 총 사업비 30억원 이상 사업은 농식품부의 사전 사업성검토 필요
지원내용	○ 농어촌 산업주체 역량강화 ○ 지역 R&D 및 정보기반 강화 ○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를 위한 생산·유통기반 구축 ○ 농어촌기업유치 및 향토기업 집적화 기반조성 ○ 농어촌형 체험·휴양 비즈니스 기반 구축 ※ 자금용도 : 사업유형별 가이드라인에서 별도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
사업특징	○ 시·도자율편성사업으로서 해당 지출한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사업 선정

□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지식경제부)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목적	○ 자방자치단체 주도로 대내외의 산·학·연·관 및 기업지원기관 간의 협력촉진과 연계강화를 통해 지역 발전역량을 결집·확충하여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연고자원의 산업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기여
지원계획 (예산)	○ '11년 예산(국고) : 586억원 ○ 지원기간 : 6년 이내 ○ 과제당 지원규모 : 6억원/년 내외 ○ 사업비 비율 : 정부출연금의 15~30% 이상 민간부담금 및 지방비 매칭
지원대상	○ (주관기관) 기업 지원기능을 할 수 있는 대학, 연구소, 기업, 기업 지원기관 등 * 3개 이상의 참여기관 참여(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동일한 요건)
선정절차	○ 사업계획 공고→사업계획서 제출→평가위원회 개최(지역) →사업계획 검토 조정(중앙)→협약체결 * '11년 사업부터 지역에서 기획·평가·관리 시행
지원내용	○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의 개념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네트워킹, 기업지원 등 S/W - 필요에 따라 장비 구축 등 H/W적 내용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
사업특징	○ 지속적인 지역혁신 창출을 위한 자립화 사업 추진 (3년 선지원후 주관기관을 영리법인화 시행) - 기존 R&D 인프라를 활용하거나 고용창출 효과등이 많은 사업은 가점을 주도록 가이드 제시

□ 지자체 연구소 육성사업(지식경제부)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목적	○ 지방의 자생적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술혁신역량 강화
지원계획 (예산)	○ '11년 예산(국고) : 115억원 ○ 지원한도 : 과제당 6~30억원, 5년이내
지원대상	○ 기초지자체(시·군)가 중심이 되어 연고자원을 고부가가치화하거나, 산업화하는데 필요한 연구소 설립 지원
선정절차	○ 2009년부터 신규사업 없음
지원내용	○ 신청자격 - 지역연고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산업화에 의지와 역량을 갖춘 지자체 및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기관 ○ 지방(지자체, 대학, 기업 등)이 총사업비의 50% 이상 부담 - 부지매입비, 기술개발활동비, 인건비 등은 지자체가 부담 ○ 국비는 연구소 건축비 및 장비·시설 구입비에만 사용
사업특징	○ 지역특화산업을 대상으로 전문적 R&D를 실시하기 위한 H/W 중심형 인프라 구축사업

2.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현황(지경부)

('11. 1 현재)

연번	시도	시군구	유형	특 구 명 칭	지정일
1	강원	원주시	산업연구	원주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	05. 4.26
2	강원	태백시	관광레포츠	태백 고지대스포츠훈련장특구	05. 6.28
3	강원	강릉시	산업연구	강릉 싸이언스파크특구	05. 9. 6
4	강원	화천군	관광레포츠	화천 평화·생태특구	06.12.19
5	강원	홍천군	의료복지	홍천 리더스카운티특구	06.12.19
6	강원	원주시	향토자원진흥	원주 옻·한지산업특구	06.12.19
7	강원	삼척시	산업연구	삼척 소방·방재산업특구	08.12.19
8	강원	영월군	관광레포츠	영월 박물관특구	08.12.19
9	강원	정선군	관광레포츠	정선 아리랑특구	10. 5.19
10	경기	이천시	향토자원진흥	이천 도자산업특구	05. 6.28
11	경기	군포시	교육	군포 청소년교육특구	05.12. 6
12	경기	양평군	향토자원진흥	양평 친환경농업특구	05.12. 6
13	경기	고양시	산업연구	고양 화훼산업특구	06. 6.20
14	경기	연천군	관광레포츠	연천 고대산평화체험특구	06. 9.12
15	경기	여주시	향토자원진흥	여주 쌀산업특구	06.12.19
16	경기	양주시	관광레포츠	양주 장흥 문화예술체험특구	08. 7.25
17	경기	안산시	관광레포츠	안산 다문화마을특구	09. 5. 1
18	경기	고양시	산업연구	고양 전시문화특구	09.12.29
19	경남	창녕군	교육	창녕 외국어교육특구	05. 2. 2
20	경남	산청군	향토자원진흥	산청 지리산약초연구발전특구	05. 4.26
21	경남	의령군	관광레포츠	의령 친환경레포츠파크특구	05. 6.28
22	경남	함양군	향토자원진흥	함양 지리산약초건강식품특구	05. 9. 6
23	경남	거창군	교육	거창 외국어교육특구	05.12. 6
24	경남	김해시	교육	김해 평생교육특구	05.12. 6
25	경남	남해군	향토자원진흥	남해 귀향마을특구	06. 2.28
26	경남	하동군	향토자원진흥	하동 야생녹차산업특구	06. 2.28
27	경남	고성군	관광레포츠	고성 체류형레포츠특구	07. 4.20
28	경남	고성군	산업연구	고성 조선산업특구	07. 7.16
29	경남	거창군	산업연구	거창 화강석산업특구	07. 9.28
30	경남	거제시	관광레포츠	거제 해양휴양특구	09.12.29
31	경북	영양군	관광레포츠	영양 반딧불이생태체험마을특구	05. 4.26
32	경북	안동시	향토자원진흥	안동 산약(마)마을특구	05. 6.28
33	경북	상주시	향토자원진흥	상주 곶감특구	05. 9. 6
34	경북	영천시	유통물류	영천 한방진흥특구	05. 9. 6
35	경북	영덕군	관광레포츠	영덕 대게특구	05.12. 6
36	경북	김천시	향토자원진흥	김천 포도산업특구	06. 2.28
37	경북	성주군	유통물류	성주 참외산업특구	06. 2.28
38	경북	의성군	유통물류	의성 마늘산업유통특구	06. 6.20
39	경북	문경시	향토자원진흥	문경 오미자산업특구	06. 6.20
40	경북	울진군	향토자원진흥	울진 로하스농업특구	06. 6.20
41	경북	상주시	유통물류	상주 고랭지포도특구	06. 9.12
42	경북	김천시	향토자원진흥	김천 자두산업특구	06.12.19
43	경북	경산시	향토자원진흥	경산 종묘산업특구	07. 4.20
44	경북	영양군	향토자원진흥	영양 고추산업특구	07. 4.20
45	경북	영주시	교육	영주 글로벌인재양성특구	07. 7.16
46	경북	봉화군	관광레포츠	봉화 파인토피아특구	07. 7.16

연번	시도	시군구	유형	특 구 명 칭	지정일
47	경북	포항시	향토자원진흥	포항 구룡과메기산업특구	07. 7.16
48	경북	영덕군	산업연구	영덕 청정에너지특구	07. 9.28
49	경북	청도군	향토자원진흥	청도 반시나라특구	07. 9.28
50	경북	칠곡군	향토자원진흥	칠곡 양봉산업특구	08. 7.25
51	경북	청송군	향토자원진흥	청송 사과특구	08.12.19
52	경북	예천군	향토자원진흥	예천 곤충산업특구	09.10.16
53	경북	고령군	관광레포츠	고령 대가야농촌체험특구	08. 7.25
54	경북	구미시	교육	구미 글로벌교육특구	08. 7.25
55	대구	중 구	유통물류	대구 약령시한방특구	04.12.30
56	대구	중 구	산업연구	대구 패션주얼리특구	05.12. 6
57	대구	북 구	산업연구	대구 안경산업특구	06. 9.12
58	부산	해운대구	관광레포츠	해운대 컨벤션 · 영상 · 해양레저특구	05. 2. 2
59	부산	기장군	향토자원진흥	기장 미역 · 다시마특구	07. 4.20
60	부산	동 구	관광레포츠	부산 동구차이나타운지역발전특구	07. 7.16
61	부산	남 구	관광레포츠	부산 남구 UN평화문화특구	10. 5.19
62	서울	동대문구	유통물류	서울 약령시한방산업특구	05. 6.28
63	서울	노원구	교육	노원 국제화교육특구	07. 9.28
64	서울	중 구	교육	서울 중구 영어교육특구	07. 9.28
65	서울	강남구	관광레포츠	강남 청담.압구정패션특구	08. 7.25
66	울산	울주군	향토자원진흥	울주 언양`봉계한우불고기특구	06. 9.12
67	울산	남 구	관광레포츠	울산 장생포고래문화특구	08. 7.25
68	인천	서 구	교육	서구 외국어교육특구	05. 4.26
69	인천	강화군	향토자원진흥	강화 약쑥특구	06. 6.20
70	인천	중 구	관광레포츠	인천 중구차이나타운특구	07. 4.20
71	전남	순천시	교육	순천 국제화교육특구	04.12.30
72	전남	여수시	관광레포츠	여수 오션리조트특구	05. 2.12
73	전남	곡성군	관광레포츠	곡성 섬진강기차마을특구	05. 6.28
74	전남	여수시	관광레포츠	여수 시티파크리조트특구	06. 2.28
75	전남	곡성군	교육	곡성 21세기농촌교육선진화특구	06. 2.28
76	전남	여수시	교육	여수 관광국제화교육특구	06. 6.20
77	전남	함평군	관광레포츠	함평 나비산업특구	06. 6.20
78	전남	장흥군	향토자원진흥	정남진 장흥생약초`한방특구	06. 9.12
79	전남	강진군	교육	강진 외국어교육특구	06.12.19
80	전남	보성군	향토자원진흥	보성 녹차산업특구	07. 9.28
81	전남	장흥군	관광레포츠	정남진 장흥문학관광기행특구	08. 4.25
82	전남	광양시	교육	광양 국제화.평생교육특구	08. 4.25
83	전남	광양시	향토자원진흥	광양 매실산업특구	08. 4.25
84	전남	함평군	향토자원진흥	함평 천지한우특구	08. 7.25
85	전남	신안군	향토자원진흥	신안 천일염산업특구	08.12.19
86	전남	순천시	향토자원진흥	순천 친환경농업특구	08.12.19
87	전남	강진군	관광레포츠	강진 고려청자문화특구	09. 5. 1
88	전남	고흥군	관광레포츠	고흥 우주해양리조트특구	09. 5. 1
89	전남	영광군	향토자원진흥	영광 굴비산업특구	09. 5. 1
90	전남	보성군	교육	보성 영어평생교육특구	09. 5. 1
91	전남	완도군	향토자원진흥	완도 전복산업특구	09.10.16
92	전남	영광군	향토자원진흥	영광 보리산업특구	09.12.29
93	전남	구례군	향토자원진흥	구례 야생화생태특구	10. 5.19
94	전남	나주시	향토자원진흥	나주 배산업특구	10. 5.19
95	전북	순창군	산업연구	순창 장류산업특구	04.12.30

연번	시도	시군구	유형	특 구 명 칭	지정일
96	전북	고창군	향토자원진흥	고창 복분자산업특구	04.12.30
97	전북	고창군	관광레포츠	고창 경관농업특구	04.12.30
98	전북	익산시	의료복지	익산 한양방의료 · 연구단지특구	05. 2. 2
99	전북	완주군	의료복지	완주 모악여성한방클리닉특구	05. 6.28
100	전북	남원시	향토자원진흥	남원 지리산웰빙허브산업특구	05. 9. 6
101	전북	진안군	유통물류	진안 홍삼한방특구	05.12. 6
102	전북	부안군	관광레포츠	부안 영상문화특구	06. 6.20
103	전북	부안군	향토자원진흥	부안 누에타운특구	06. 9.12
104	전북	부안군	산업연구	부안 신 · 재생에너지산업클러스터특구	07. 4.20
105	전북	김제시	향토자원진흥	김제 총체보리한우산업특구	07. 4.20
106	전북	순창군	의료복지	순창 건강장수과학특구	08.12.19
107	전북	전주시	관광레포츠	전주 한스타일산업특구	10. 5.19
108	제주	서귀포	관광레포츠	국토최남단마라도 청정자연환경보호특구	04.12.30
109	제주	제주시	향토자원진흥	제주 추자도 섬굴비 섬체험 특구	09. 5. 1
110	충남	금산군	유통물류	금산 인삼헬스케어특구	05. 4.26
111	충남	논산시	향토자원진흥	논산 청정딸기산업특구	06. 6.20
112	충남	청양군	향토자원진흥	청양 고추`구기자특구	06. 9.12
113	충남	논산시	향토자원진흥	논산 양촌곶감특구	06.12.19
114	충남	논산시	향토자원진흥	강경 발효젓갈산업특구	07. 7.16
115	충남	태안군	산업연구	태안 종합에너지특구	07. 9.28
116	충남	예산군	향토자원진흥	예산 황토사과특구	07. 9.28
117	충남	서천군	향토자원진흥	서천 한산모시산업특구	07. 9.28
118	충남	아산시	교육	아산 국제화교육특구	07. 9.28
119	충남	천안시	교육	천안 국제화교육특구	08. 4.25
120	충남	서산시	관광레포츠	서산 바이오 · 웰빙특구	08.12.19
121	충남	홍성군, 예산군	교육	충남, 홍성 · 예산 국제문화교육특구	08.12.19
122	충남	부여군	향토자원진흥	부여 양송이특구	09.10.16
123	충남	서천군	향토자원진흥	서천 한산소곡주산업특구	09.10.16
124	충남	공주시	교육	공주 한민족교육특구	10. 5.19
125	충남	공주시	향토자원진흥	공주 5都2村알밤특구	10. 5.19
126	충북	제천시	유통물류	제천 약초웰빙특구	05. 4.26
127	충북	괴산군	향토자원진흥	괴산 청정고추산업특구	05. 6.28
128	충북	옥천군	향토자원진흥	옥천 묘목산업특구	05. 9. 6
129	충북	충주시	향토자원진흥	충주 사과특구	05.12. 6
130	충북	옥천군	향토자원진흥	옥천 옻산업특구	05.12. 6
131	충북	영동군	향토자원진흥	영동 포도와인산업특구	05.12. 6
132	충북	단양군	산업연구	단양 석회석산업발전특구	06. 2.28
133	충북	음성군	향토자원진흥	음성 다올찬친환경수박특구	06. 6.20
134	충북	영동군	향토자원진흥	영동 감고을감산업특구	07. 4.20
135	충북	청주시	관광레포츠	청주 직지문화특구	07. 7.16
136	충북	제천시	관광레포츠	제천 에코세라피건강특구	08. 4.25
137	충북	충주시	관광레포츠	충주 중원역사문화레포츠특구	08. 4.25
138	충북	보은군	향토자원진흥	보은 대추 · 한우특구	08.12.19
139	충북	증평군	관광레포츠	증평 에듀팜특구	09.10.16
140	서울	관악구	교육	관악 Edu-valley교육특구	10.11.18
141	전남	해남군	향토자원진흥	땅끝해남 웰빙고구마산업특구	10.11.18
142	전남	완도군	향토자원진흥	완도 해조류건강·바이오특구	10.11.18
143	전남	화순군	산업연구	화순 백신산업특구	10.11.18

3. 농공단지 부처별 지원 현황

<table>
<tr><th>구 분</th><th>세 부 내 용</th></tr>
<tr><td>☐ 개발지원(농림수산식품부)
○ 단지조성비지원
- 농어촌정비법 77조, 78조
- 농공단지 통합지침 제13조

○ 판매지원
- 생산제품 수의계약</td><td>○ 지원액(단위 : 천원/3.3058㎡) → 균특회계
<table><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3">일반단지</th><th colspan="2">전문 · 지역특화</th></tr><tr><th>일반농어촌</th><th>추가</th><th>우선</th><th>일반</th><th>추가·우선</th></tr><tr><td>국비보조</td><td>15</td><td>50</td><td>70</td><td>30</td><td>70</td></tr><tr><td>국비융자</td><td>10</td><td>20</td><td>20</td><td>10</td><td>20</td></tr><tr><td>지방비보조</td><td>5</td><td>10</td><td>10</td><td>10</td><td>10</td></tr><tr><td>합 계</td><td>30</td><td>80</td><td>100</td><td>50</td><td>100</td></tr></table>* 금리5%, 5년거치10년 균분상환
○ 국가 · 공공단체 · 정부투자 기관에 물품납품시 수의계약 가능
- 농어촌정비법 제79조(생산제품의 판매지원)</td></tr>
<tr><td>☐ 입주지원(지식경제부)
○ 입주기업 자금 지원
(농공단지 통합지침제 23조)

○ 교육훈련비지원
(농공단지 통합지침 제29조)</td><td>○ 시설자금 : 20억원(조건 4.79%, 5년거치 5년상환)
○ 운전자금 : 5억원(조건 4.79%, 2년거치 2년상환)
* 시설자금 : 입주계약일로부터 2년이내
* 운전자금 : 공장설립 완료 후 필요시
○ 입주기업 인력의 교육훈련 실시의 경우, 1인 월10~50만원 이하로 6개월 이내 지원(단, 지원액의 70%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자체 · 업체가 부담)</td></tr>
<tr><td>☐ 공동폐수처리장 지원
○ 폐수종말처리시설비지원(환경부)
(농공단지 통합지침 제37조)</td><td>○ 사업비 부담비율 → 환특회계
<table><tr><th>구 분</th><th>일반농어촌</th><th>추가지원</th><th>우선지원</th></tr><tr><td>국비보조</td><td>50%</td><td>70%</td><td>100%</td></tr><tr><td>국비융자</td><td>50%</td><td>30%</td><td></td></tr></table>* 융자금리5.5%, 3년거치 10년 균등</td></tr>
<tr><td>☐ 세제지원(기획재정부 등)
○ 단지개발 사업자 지원
(지방세법 제276조)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지방세법 제276조)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 기타 지원
○ 병역특례업체 지정등
○ 각종 개발 부담금 등 면제</td><td>○ 취득세 · 등록세 : 면제
* 부동산 및 단지조성 후 건축물 등의 신 · 증축의 취득물
○ 재산세 : 5년간 50% 경감(비 수도권 면제)
○ 종합부동산세 : 5년간 50% 경감(비 수도권 면제)
* 지방세법의 재산세 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
○ 취득세 · 등록세 : 면제
○ 재산세 : 5년간 50% 경감(비 수도권 면제)
○ 종합부동산세 : 5년간 50% 경감(비 수도권 면제)
○ 법인세 · 소득세 : '12.12.31까지 감면(인구 20만 미만 시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

○ 병역특례업체 지정 및 외국인연수생 추천 우대
○ 농지보전부담금(농지법 제38조), 대체산림조림비(산지관리법 제19조), 개발부담금(개발이익 환수 법률 제7조)</td></tr>
</table>